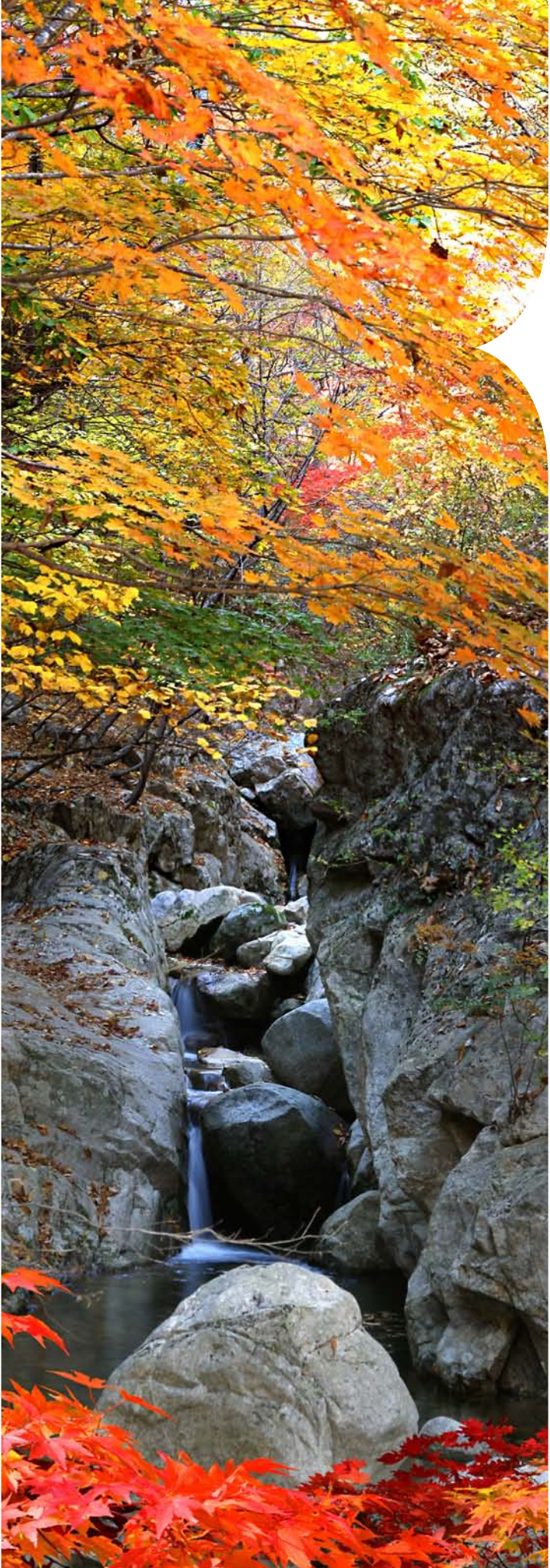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조선시대 백성의 언론

/ 지상중계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개

2015
11

Vol. 185



아버지의 겨울 농사

눈 내리는 겨울 아침
서울에서 자란 아이의 손을 붙들고
보리는 가로질러 아버지 산소를 향해 걸었다
키 작은 보리는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고
웃자란 아이처럼 키 큰 보리만
얼굴 내밀고 웃고 있었다
- 이까짓 눈썹이야
소리치고 있었다
아이는 눈 속에서 소리치는 초록을 향해
까르르 까르르 눈송이 같은 웃음을 날렸지만
나는 웬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키 작은 보리처럼 내리는 눈에 묻혀
묵묵하게 묵묵하게 견고 있었다
눈은 사정없이 퍼부어 앞은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낭랑하게 들려왔다
- 웃자란 보리는 꼭꼭 밟아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떠 죽는 법이야

김영재

- 1974년 <현대시학> 등단
- 현 도서출판 책만드는집 대표, 계간 <좋은시조> 발행인
- 고산문학대상, 중앙시조대상, 가람문학대상 등 수상
- 시집 『화답』 『홍어』 『화엄동백』 『겨울 별사』
- 여행산문집 『외로우면 걸여라』 등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pacblog.kr

twitter.com/pac_news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5 November Vol.185

- 04 역사 속 언론 조선시대 백성의 언론
- 06 문화가 산책 클래식 음악에 '빛'을 더해주는 조명
- 07 古典名句 당인當仁, 불양어사不讓於師
- 08 신 동의보감 아토피와 음식
- 09 상담노트 얼굴없는 사진과 초상권
- 10 지상중계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 12 조정후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 13 위원회 뉴스·위원동정
- 14 조정중재사례
-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11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조선시대 백성의 언론



조선시대에 관료들만 억울한 일이 있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입안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언론이 개방되었다. 유교윤리와 강상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백성들에게도 언론 참여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칠 수 있었으나 문턱이 높았던 '신문고'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한편, 억울한 일을 바로잡음으로써 선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청원·상소·고발장치가 '신문고'였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몇 겹의 관료체계를 거치면서 걸러지거나 변형되는 시류 정보의 한계 보완과 언론이 열린 정치를 구현할 목적이었다. 불통의 정치를 극복하고 소통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장치의 하나였던 것이었다.

일반 백성에게 언론을 개방한다는 취지로 설치·운영된 신문고는 신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치였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모순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는 일이 쉽지 않았으며,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다. 신문고가 설치된 자리가 평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궐(창덕궁의 이정전, 서남문과 경희궁의 숭정전, 동남문인 건명문)이었다. 그것은 '누구나 칠 수 있다'는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효용성이 거의 없었다. 접수된 사안 중에도 사헌부에서 규명한 후, 정당한 것은 판결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되,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인 경우는 북을 친 자에게 벌을 주기도 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북을 치는 절차의 까다로움이었다. 만일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북을 치면 엄벌로 다스렸다. 게다가 모든 문제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었다. 엄격한 신분제에 의하여 위사람에 대한 일은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북을 치는 사유도 규정과는 달리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해나 노비·형벌·재산 문제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에 관련된 일에 한해서만 받아들여질 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문고는 칠 수 있는 자격이나 많은 통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고는 조선의 통치자들

이 일반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발언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민중의 의견을 지배층에 전달하는(下情上達) 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왕이 지나는 길목에서 친 '격쟁'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 정신없이 뛰다가도 그 자리에서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어야 했던 것이 왕의 행차였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왕 앞에 나서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격쟁'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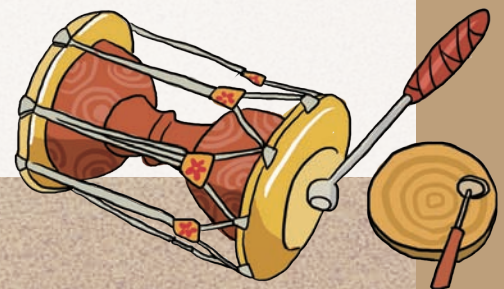
격쟁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임금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징이나 팽과 리를 쳐서 해결책을 구하는 제도였다. 신문고가 폐지된 뒤에 실시된 제도로, 국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장치였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파격적인 청원제도이긴 하지만, 신문고처럼 무조건 격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처가 남편을 위하여, 동생이 형을 위하여, 종이 주인을 위하여 격쟁하는 경우 등 네 가지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원칙의 운용에는 융통성이 있게 마련이어서, 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소송 거는 것을 즐겨 사리에 어긋나는 일로 격쟁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 귀양 3천 리의 벌을 내렸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했다. 격쟁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최종 판결을 담당한 관리들의 오판이 많았던 데다가, 절차가 편하다 보니 사소한 일로 격쟁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1560년(명종 15)에는 궁궐에 함부로 들어와서 격쟁하는 자가 너무 많아 이들을 엄벌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사소한 격쟁의 난립과 제도 운용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777년(정조 1)에는 대궐 밖에서만 격쟁하는 법을, 1858년(철종 9)에는 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만 격쟁·소원할 수 있는 법을 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격쟁이 축소된 것은 사소한 격쟁과 오판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길을 좁힌 행정 편의적 조치이기도 하다. 권력과 재력에서 소외된 민중들이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일부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백성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언론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클래식 음악에 ‘빛’을 더해주는 조명

조명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자 오락과 여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인간의 생활 주기가 노동 시간인 낮과 오락과 여흥 시간인 밤으로 나뉘게 되자 음악의 장은 밤으로 옮겨왔고, 조명은 공연(연주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초가 탈 때, 연주자들의 돈도 타들어가

17~18세기의 공연장에는 무대와 객석 전체를 비추도록 거대한 상들리에가 설치되었다. 상들리에에 사용되던 초는 당시 고가의 물건이었다. 그래서 연주가 연주회를 개최할 때, 경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조명 비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물 기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탈 때마다 냄새가 심했고 심지를 계속 잘라주어야 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향이 들어간 초를 사용하기도 했다. 18세기 후반의 라 스칼라 극장(이탈리아 밀라노)은 3,200명의 관객을 수용했고, 1792년에 완공된 라 페니체 극장(이탈리아 베네치아)도 3,000명을 수용했다. 당시의 극장이 그리 작지 않은 공간임을 생각해볼 때, 그 안을 밝히는 데에 사용된 초의 개수는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물성 기름이 연소되며 나는 냄새로 인해 관객들의 화려한 옷에선 ‘삼겹살 냄새’가 나지는 않았을까 상상도 해보게 된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조명의 기능이 차츰 바뀌어 갔다. 그 전까지는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공연장의 내부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면, 이제 객석의 조명을 줄여 객석과 무대가 대비를 이루는 방식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무대와 객석이 공간으로 한번 나뉘고, ‘빛’으로 인하여 한번 더 명확히 구분된 것이다. 1781년에는 라보아제가 ‘극장 조명 방법에 관한 연구보고’를 저술하여 발표했으니 조명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 조명, 실용을 넘어 무대 미용의 도구로

‘제 수입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없는 주제에 돈만 많이 가져가는) 악단, 조명, 경비원, 인쇄 등의 잡비가 큰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모차르트(1756~1791)가 쓴 편지의 일부이다. 당시 연주는 연주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기본이고, 경비원, 포스터 인쇄는 물론이고 조

명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럼 당시의 조명 비용은 얼마나 했을까. 명확히 알 수 없지만, 1801년 모스크바의 신문 일면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연주회장의 조명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주회를 여는 자는 연주회장 소유자에게 여쩔 수 없이 200리브르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200리브르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공연의 입장료가 비싼 측에 속하는 5리브르였다고 하니, 연주가에게 조명 비용은 확실히 큰 부담을 안겨주던 존재였다.

연주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관객이 빛에 대해 갖는 관심은 커져만 갔다. 앞서 말한 대로 초가 고가라고 하여도 그것을 사용하여 ‘빛’의 황홀함을 실감하게 해주고, ‘별천지’의 환상을 제공해준 곳은 공연장과 무대였다. 특히 초는 무대를 비추는 실용적(實用的) 기능 외에도 무대 효과를 연출하는 미용적(美容的) 기능도 도맡았다. 그 빛이 일구던 무대 풍경이 얼마나 몽환적이고 매력적이었는지는 영국작곡가 찰스 버니(1726~1814)의 일기에도 잘 나와 있다. 그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체류 중이던 1771년에 산카를로 극장에서 니콜로 옴멜리(1714~1774)가 작곡한 오페라 <데모포온테>를 관람하고 한 장면을 기억하며 이렇게 적었다.

‘각 발코니 객석 앞에는 길이 3~4피트, 폭 2~3피트의 거울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 개의 커다란 초가 꽂혀 있었다. 초의 불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무대로 향하는 빛을 증폭시켰다. 화려했다. 눈이 아플 정도였다.’

오늘날 사용하는 조명기기의 전신이기도 한 이러한 기술은, ‘빛’을 통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과 관객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즉, ‘시간’예술로서의 음악은 ‘빛’의 역사가 개입되면서 ‘시각’예술로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 빛이 없어져도 공연은 계속 된다

인간의 역사에 초가 조명 수단으로 등장하고, 그 뒤에 이를 대신한 램프가 사용되었으며, 이어서 가스등과 전구가 발명되었고, 나아가 형광등이 가정의 주요 조명 도구로 자리하게 되었다. 전구와 형광등의 시대가 열리면서, 초를 타게 하던 동물기름의 자리에 전구와 형광등을 밝



당인 當仁, 불양어사 不讓於師

히는 전기가 들어서게 되었다. 초에 비해 냄새도 없고, 화재 위험도 적은 전구와 형광등 그리고 전기. 하지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에 연주회장에는 초나 등불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이다.

바이올린이 '제금(提琴)'이라고 불리던 194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중(1918~2006)의 독주회 기사를 통해 당시 공연장 풍경을 들여다보자. '막을 올리자 때마침 정전으로 무대에 준비된 '칸데라' 불빛으로 겨우 연주자의 면모를 찾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연주는 시작되었다(동아일보 1948년 12월 9일자). 여기서 '칸데라'란 칸델라(kandelaar)의 과거 표기로, 호롱에 석유를 넣어 불을 켜서 들고 다니는 등의 일종을 일컫는다.

극단 광장은 셰익스피어(1564~1616)의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을 국립극장 상연 중간에 정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놓고 이어가야 했다(동아일보 1966년 6월 25일자). 정전은 공들여 만든 무대를 잡아먹는 '어둠'의 사자였다. 그래서 당시의 기사에는 '자가발전시설 하나 없는 국립극장의 위신과도 관계된 슬픈 현상(동아일보 1966년 6월 25일자)', '시내 3류 극장만 해도 자가발전시설을 갖고 있는 판에 정부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극장이 이 모양이니 국립극장에 '국립'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냐'(매일경제 1969년 11월 6일자)라는 비판이 실리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1970년대 까지도 비밀비재했다.

그런데 예술의 장르마다 정전과 어둠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나보다. 작곡가 백병동(1936~ , 전 서울대 교수)은 1960~70년대에 작곡 발표회를 할 때, 정전이 되면 준비한 초들로 무대를 밝혔다고 한다. 수십 개의 촛불은 전기 조명과 달리 '운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로 인해 음악 또한 다르게 들려왔다고 자서전 〈소리의 사제〉에서 회고하고 있다.

유럽은 물론 한국의 근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음악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주역의 역할을 한 빛. 인쇄술의 발달이 악보의 보급과 유통을 변화시켰듯이 빛과 조명도 음악사를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음악의 역사는 빛과 함께 발전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완전한 신에 비해 지식과 의지 등 모든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신은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실현한다. 사람은 하기로 했더라도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면 그때 하려고 한다.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호기심, 궁금증, 불안을 갖지 않는다.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좌불안석이다.

다행히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언어를 통해 토론하여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름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혼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여럿이 함께 하여 어려움을 풀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출신, 학력, 경력, 관심이 다르므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사람의 생각이 끝까지 다를 때 공자는 어떻게 했을까? 유교가 가부장적이어서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논어』를 읽으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만한 덕목과 가치를 지키자고 요구하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 복종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되는 핵심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람다운과 관련해서 스승에게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당인當仁, 불양어사不讓於師) 스승은 학생의 지적 근원이다. 가부장적인 문화에 따르면 학생은 당연히 스승에게 순종해야 한다. 공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길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중대한 사안이다.

양(讓)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다는 뜻이다. 불양(不讓)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불양은 스승에게도 뒤지지 않을 탄탄한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해보라. 학문의 세계에서 학생이 스승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임에서 자신의 주장을 지켜내려면 그냥 우기는 것만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언론도 선정적인 주장, 상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불양어사'의 정신 자세로 사회의 현안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찾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토피와 음식

아토피 환자의 3대 증상이 있다. '피부습진', '천식', '비염'이다.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피부를 긁어 대고 기침 및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난다. 가렵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뭔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무심결에 팔, 다리, 등을 긁고, 머리를 긁적거린다. 기침을 하면 며칠 만에 낫는 법이 없다. 보통 기침을 하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침을 한다. 열도 없고 가래도 없는데 사람을 만나 조금만 긴장을 해도 기침이 난다. 게다가 콧물이 나면 재채기가 심해지고 눈이 가려워 문지르다보니 눈마저 충혈되곤 한다.

흔히 이런 분들을 일컬어 약골(弱骨)이라 말을 하곤 하는데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서이다. 하지만 사실 건강한 데도 이런 증상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대개 수많은 연고를 바르고 기침약과 알러지약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가곤 한다.

이런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몸이 '과민'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정 음식이나 환경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다. 전에 어느 캐나다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밀가루에 알러지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영어교사로 왔는데, 밀가루 대신 쌀을 먹으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밀가루가 든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알러지 증상이 바로 바로 나타나서 몸이 무척 불편해진다고 한다. 이런 분들은 밀가루가 든 음식만을 끊어주어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밀가루가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된다.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무겁고 장이 불편하여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나고 나른해지며 몸이 무거워지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끼니를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한다. 또한 메밀 혹은 조개나 게, 새우, 생선 등의 해산물에 과민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먹더라도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이라든가 두통이나 피부염 등의 증상이 찾아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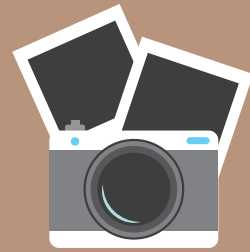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과민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은 맛이나 영양만을 고려한 채 먹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에 몸이 불편하게 반응한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

간단하게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특정 음식을 손에 쥐고 오링테스트를 하거나 스킨테스트를 하면 된다. 스킨테스트는 음식을 피부에 바른 뒤 관찰을 해보면 피부가 가렵고 붉게 반응을 하는 음식의 재료가 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한방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음식을 분류하는데, '열(熱)체질'과 '한(寒)체질', 잘 붓는 '습(濕)체질'과 건조한 '조(燥)체질'로 나누기도 하고, 오행(五行)체질, 사상(四象)체질, 팔상(八象)체질 등으로 나누어 체질에 맞는 음식과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분류를 했다. 같은 영양이라 해도 사람에 따라 어떤 음식은 몸에 더 좋고 어떤 음식은 몸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체질에 맞춰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이제 가을이 찾아왔다. 평소 몸이 가렵고 천식이나 비염 같은 과민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먹는 음식 중에서 맞지 않는 음식은 절제해서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





얼굴없는 사진과 초상권

최근 모 신문에서는 꽤 흥미 있는 뉴스를 보도했다. 한 여자대학교와 인근의 남녀공학 대학교 학생들의 옷차림을 비교, 분석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패션이 반영하는 시대와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언론사의 의도였다고 한다.

문제는 그 사진이 몰래 찍은 것이라는 데 있었다. 각 학교에서 200여명 씩 총 400여 명의 학생들 사진을 촬영,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초상권자인 학생들 일부에게만 동의를 받았다. 패션에 관한 기사인 만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을 제외한 신체 전부가 드러난 사진이었다.

보도가 나간 후, 대상이 된 학생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체 전부가 드러나 지인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울먹였고, 대학 서열의 잣대로 자신을 비하하는 댓글에 상처를 입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위 사안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른바 초상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분이 얼굴이기 때문에, 과연 얼굴 없는 사진에도 초상권이 인정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즉 얼굴은 특정인임을 식별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일 뿐이지 꼭 얼굴이 아니라도 뒷모습, 발 등도 초상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작년 8월, 법원은 “비록 얼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하였더라도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얼굴을 제외하고 신체 전부가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된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대학 캠퍼스와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수백

명을 촬영할 때에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해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피해의 정도와, 초상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던 공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보도되는 사안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되어 공공성이 있고, 해당 보도에 그 초상을 공개하는 것이 꼭 필요했으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언론사가 면책될 수 있다.

과연 이 사건에서 지나가는 여대생들의 옷차림을 찍어 보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성은 무엇일까. 패션이 반영하는 시대와 상황을 알려 주겠다는 언론사의 취지는 좋았으나 기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수백 명 학생들의 초상권보다 중요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그대로 피해자들의 초상을 노출하는 대신에 그래픽으로 처리해 기사화하는 등,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상권자의 피해를 상쇄시킬 정도로 우월한, 기사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가끔 기자들을 만나면 도대체 이것도 찍지 말라 저것도 찍지 말라, 어떻게 보도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하지만, 일일이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게재해야 한다고 해서 취재나 기사 작성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불편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초상권자의 피해와 비교·형량 해야 하는 대상은 보도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이지 결코 기자 개인의 불편이 아니다. 내가 만약 초상권자 본인이라면 어땠을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보도를 위해 정말 꼭 필요한지 재삼재사 숙고한다면, 애써 보도한 기사가 초상권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디지털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개

침해배제청구권 규정, 댓글 및 폼글 등에 대한 조정,
유사뉴스서비스 개념 도입 등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부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상의 다양한 언론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잘못된 기사의 댓글 및 폼글로 인한 피해 구제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는 김수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기조발표에 이어 강현석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과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장의 '인터넷 상의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에 대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성범 의원



문재완 회장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재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박용상 위원장



김수일 부장판사

축사에 이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

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법률 개정안을 공개하게 됐다”며, 개정법안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당부했다.

기조발표에서 김수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피해영역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따라 확장되고 있으나, 구제방안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중

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현석 조사팀장은 언론 조정·중재 현장에서 경험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이로 인해 부각된 현행 언론중재법의 한계점을 실제 조정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강 팀장은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언론사의 원 기사가 삭제되더라도 블로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된 폼글과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로 인한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완전한 구제가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재규 교육콘텐츠팀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양 팀장은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을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규정’, ‘기사 댓글과 폼글에 대한 조정 중재절차 도입’, ‘신생 뉴스미디어까지 언론피해구제 범위 확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신설된 침해배제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는 허위이며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웹사이트 게시중단, 기사 수정 및 보완, DB 기사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팀장은 기사에 달린 댓글과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된 펴글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한 데 대해서, 인터넷 환경 하에서 기사로 인한 피해가 반드시 언론보도로 인한 피

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일괄적인 피해구제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사 댓글의 경우에는 게시자가 아닌 웹관리자를 상대로, 펴글은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기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표현의 자유와 게시자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사뉴스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현행법에 정함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서비스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 새로운 피해구제책 마련에 공감, 각계 의견 수렴해 다듬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포털사, 학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참가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은 인터넷상에서의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게시글 및 댓글에 대

한 판단이 어려운 웹사이트 관리자가 피신청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디지털 뉴스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까지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다만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 중 권리 침해의 '계속성'과 '중대성'의 판단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 그 기준과 의미를 분명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는 현행법상으로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댓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댓글 등

을 기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댓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신속·간이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위법한 댓글 등에 대해 포털사를 상대로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포털사,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부담도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은 뉴스 배포와 언론 생태계에 포털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펴글, 댓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포털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듬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

이상원
사회자/중재위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
뉴스본부 취재팀장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 피해상황에 공감, 조정합의로 결론나

한 방송사는 친모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며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아동의 모습을 게재했다. 해당 사건의 친모는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좋아하고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했는데, 그 딸이 남동생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아빠에게 알린 후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었다.

방송사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가정의 딸과 관련한 보도내용에서 여자아이의 모습을 스케치 화면으로 삽입하였는데, 바로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파트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사건이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상단에 위치하여, 그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신청인의 초상이 나온 부분이 캡처된 이미지가 뉴스와 함께 검색되는 것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방송사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2곳을 상대로 로도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심리가 개최되었다.

미성년자인 신청인을 대리해 조정심리에 참석한 신청인의 어머니에 따르면, 가뜰이나 살해당한 피해자가 구급요원에 의해 이송되는 모습을 보고 공포와 불안감을 느낀 신청인이 이후 신청인의 옷차림과 가방을 눈여겨 본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네가 그 사건의 누나냐’ 또는 ‘너희 집에서 살인사건이 난 것이냐’는 오해를 사게 되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신청인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손해배상, 그리고 신청인의 이미지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조정심리에서 유난히 자주 들게 된 말은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였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필자도 친자식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1차 울분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귀한 자식을 영동한 살해사건과 연관 짓는 바람에 신청인 가족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2차 공감을 하였다.

한편 언론사 및 포털사에서 나온 대리인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버이의 심정에서 이 사건의 피해 상황에 공감을 표시했다. 중재부에서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당사자간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었다.

방송사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손해배상금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초상을 삭제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의 목록을 전달받아 더 이상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포털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방송사로부터 기사공급계약에 따라 단순히 해당 기사가 검색되도록 한 포털사는 향후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제 더 이상 신청인의 이미지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보도로 인해 갑작스레 신청인의 가정에 들이닥쳤던 불안감이 잊혀지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너와 나의 입장을 상호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갈등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깊이 드는 사건이었다.



위원회 뉴스
—
NEWS

초·중·고 교원 연수 실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에 걸쳐 위원회가 운영한 초·중·고 교원 연수가 마무리됐다. ‘학교관리자를 위한 갈등해결과 언론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20여 명의 전국 초·중·고 교원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내 갈등의 조정인 내지 능동적 관리자로서 교원들의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 관리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연수 참가자들은 회복적 정의를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조정의 이론과 실습, 학교관련 보도와 언론피해의 구제 사례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수강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언론피해예방교육 실시



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11층 위원회 강 의실에서 서울시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무원의 언론분쟁해 결 역량 강화를 위해 위기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법, 언론환경 변화와 언론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지자체·공공기관 관련 언론조 정사례 분석과 ADR제도에 대한 강의로 구성돼 공공갈등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위원동정
—
COMMISSIONERS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활성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지성우 위원(서울제2중재부, 성균관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은 10월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로 열린 ‘신규 ICT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석

강태훈 부장(서울제2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10월 1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법원 판결이 아닌 중재를 통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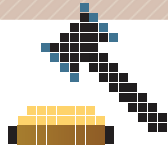
단국대 초빙교수 임용

오광건 위원(경기중재부,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단국대 교양교육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오 위원은 금년도 2학기부터 언론법제 과목을 맡아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 이론과 함께 언론현장의 여러 갈등현황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갈등해결 역량 심화과정 운영

위원회는 10월 27일과 29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갈등 해결 역량강화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갈등을 해소하는 대화기법’과 ‘전문적 갈등 개입을 위한 조정 전략’ 두 과목으로 개설된 이번 연수 과정은 실제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갈등상황을 이해하는 대화요소 및 갈등 유형별 접근방법, 조정자의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조정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이미지 무단 사용 카드뉴스,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성립



A 인터넷신문은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한 의경대원이 모 경위가 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카드를 넘겨보는 형식의 기사로 전하면서, 경찰관인 신청인이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입었던 피가 묻은 제복 사진을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의 제복 이미지인 것처럼 잘못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이미지를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도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카드뉴스 형식의 조정대상기사가 최근 SNS에서 쉽게 매개되고 있어 신청인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문제가 된 이미지를 교체하고,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과 함께 상징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모 경찰서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직권조정결정 수용

C 언론사는 모 경찰서장이 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뺏아버리겠다”는 등의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서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해명을 해야 할 특정 단체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해당 경찰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경찰과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외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당부 내지 주의의 말 정도만 했는데 이를 들은 모 단체 회원들이 발언을 왜곡해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도를 할 경우, 원 보도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나 오히려 막말논란이 다시금 부각되거나 주의가 환기될 수 있다는 점, 인터넷 기반 언론사라는 점, 신청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를 인터넷과 포털(뉴스섹션은 즉시, 다른 웹문서 등은 연말까지 신청인 검색 후 피신청인 통보)에서 모두 삭제하고, 연말까지 A경찰서에 대한 PR보도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결정이 확정됐다.

다소 과장된 제목을 사용한 방송,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B 방송은 모 국회의원실로부터 신청인 공사와 합작투자 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전달받아 “○○○○ 주재원들, 골프·유흥비 25억...”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주재원들이 회사운영비로 골프를 치고 고급 유흥주점을 자주 이용했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가 된 25억 원은 현지법인의 현지고용 인건비 등이고, 100여 만 원 정도의 유흥주점 이용 사실은 있으나 회사비용으로 골프를 친 사실은 없고, 현지 주재원은 1명으로 혼자 골프와 유흥비로 25억원을 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보도의 균형 측면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제목이 사실과 다르게 다소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초상 공개, 손해배상 책임 인정

D 방송은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초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조그만 카메라로 본인을 찍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방송에 나갈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방송사의 사전예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위에 알리지 않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보도로 인해 지인들에게 근무 사실이 드러나 곤란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경비원과 만나는 최초의 상황을 촬영한 후, 제작진이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후속 촬영이 1~2분 간 계속되었는데 신청인이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최영지-

「언론  사람」 10월호 상담노트 코너의 '익명보도의 딜레마'를 읽고,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 원칙이 있는데, 때로는 익명이나 이니셜로 보도하는 경우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건과 추문에 휘말린 것도 억울하고 기분조차 나쁜데, 매출이나 개인 또는 법인의 이미지마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익명보도의 경우에도 미지의 또는 제3의 인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론사는 보도를 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한번 더 정확하게 체크한 후에 보도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이귀숙-

10월호 위원단상 '독서치료와 언론중재위원'을 읽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어렵고 힘들며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며, 누구라도 자신이 지닌 재능과 소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품의 활동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중재위원인 필자께서 언론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자신도 손수 노래치료나 독서치료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강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개설



pacblog.kr **NEW**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조정중재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이란?

- 언론중재 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 및 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 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 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물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 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서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트위터: twitter.com/pac_news